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 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 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 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 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 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다만,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무				
9. 경차 주차 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연도 주차면수})] \times 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주차면수})] \times 100(\%)$$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